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80
----------	-----

제출년월일: 2024. 5.  
제출자: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2차 변경계획은

가) 토지 취득 : 5건, 14필지, 24,547㎡, 1,785,730천원

1)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변경) : 3필지, 17,164㎡, 424,524천원

\* 당초 : 2필지, 10,162㎡, 312,132천원

(증 2필지, 11,812㎡, 170,112천원 / 감 1필지, 4,810㎡, 57,720천원)

2)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리빙하우스 조성사업 : 5필지, 1,441㎡, 398,886천원

3) 대화 대체주차장 조성사업(기부채납) : 3필지, 681㎡, 317,920천원

4) 대화 대체주차장 조성사업(매입) : 1필지, 361㎡, 144,400천원

5)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건립사업 : 2필지, 4,900㎡, 500,000천원

나) 건물 취득 : 5건, 5동, 6,310.74㎡, 26,220,000천원

1) 진부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 1동, 2,100㎡, 9,670,000천원

2) 평창지역자활센터 이전 신축사업 : 1동, 941㎡, 4,000,000천원

3)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리빙하우스 조성사업 : 1동, 1,600㎡, 8,000,000천원

4)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사업 : 1동, 769.74㎡, 3,000,000천원

5)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건립사업: 1동, 900㎡, 1,550,000천원

### 3. 붙임자료

- 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1부
- 나. 2024년 제2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 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부서별) 1부
- 라.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붙임 나]

## 2024년도 제2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취득 합계(5건, 14필지)			24,547	1,785,730			
소계(1건, 3필지)			17,164	424,524			
1	전	용평면 장평리 404-3	5,352	254,412	2023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변경)	평창군
2-1	임	용평면 장평리 산281	△4,810	△57,720	2023		김**
2-2	임	용평면 장평리 산281-2	5,313	53,130	2023		평창군
3	임	용평면 장평리 산258	6,499	116,982	2024		산림청
소계(1건, 5필지)			1,441	398,886			
1	대	대화면 대화리 413-1	298	79,566	2024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리빙하우스 조성	정**
2	대	대화면 대화리 413-2	245	65,415	2024		정**
3	전	대화면 대화리 414-3	650	186,387	2024		정**
4	대	대화면 대화리 414-4	145	39,476	2024		정**
5	대	대화면 대화리 414-30	103	28,042	2024		정**
소계(1건, 3필지)			681	317,920			
1	대	대화면 대화리 968-3	496	238,080 (기부채납)	2024	대화 대체주차장 조성	윤**
2	대	대화면 대화리 960-7	73	35,040 (기부채납)	2024		윤**
3	대	대화면 대화리 960-8	112	44,800 (기부채납)	2024		윤**
소계(1건, 1필지)			361	144,400			
1	답	대화면 대화리 968-4	361	144,400	2024	대화 대체주차장 조성	윤**
소계(1건, 2필지)			4,900	500,000			
1	답	대화면 대화리 1257-1	4,722	487,000	2024	농기계임대 사업소 대화지소 부지 매입	손**
2	답	대화면 대화리 1257-2	178	13,000	2024		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건물취득 합계(5건, 5동)			6,310.74	26,220,000			
1	전	평창읍 후평리 752-2 외 2필지	941	4,000,000	2026	평창지역 자활센터 이전신축	
2	체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	2,100	9,670,000	2027	국민체육센터 신축	
3	대	대화면 대화리 413-1 외 5필지	1,600	8,000,000	2027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리빙하우스 조성	
4	임	평창읍 상리 333-1 외 2필지	769.74	3,000,000	2024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	
5	답	대화면 대화리 1257-1 외 1필지	900	1,550,000	2025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신축	

[붙임 다]

##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

사업명	부서	쪽
1.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올림픽체육과	8
2.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변경)	올림픽체육과	11
3.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복지정책과	15
4. 평창 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경제과	18
5.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	산림과	22
6. 대화면 기초생활거점 대체주차장 조성사업	농정과	25
7.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 및 대화지소 신축	축산농기계과	30

#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 체육시설 기반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국민체육센터(수영장)을 건립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 건강한 여가활동에 기여

## □ 사업개요

- 위치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사업량 : 지하1층/지상1층(연면적 2,100m<sup>2</sup>)
  - 지하 1층 : 전기실, 기계실등 : 580m<sup>2</sup>
  - 지상 1층 : 수영장(25m, 5레인), 샤워실, 사무실등: 1,520m<sup>2</sup>
- 사업비 : 9,670백만원(기금 3,000, 군비 6,670)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b>계</b>	<b>9,670</b>	<b>400</b>	<b>4,870</b>	<b>4,400</b>
국비	3,000	200	1,400	1,400
도비	-	-	-	-
군비	6,670	200	3,470	3,000

## □ 검토사항(필요성)

- 우리 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자체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이 없으며, 평창 교육청 소속 평창초등학교내 수영장이 유일한 공공체육시설이나 지역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개방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시설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신규 공공체육시설(수영장)을 설치할 필요성 있음.

## □ 취득대상 재산내역

### ○ 건물

(단위 : m<sup>2</sup>,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축 연면적	용도 (구조)	재산가액		취득 시기
						기준가격	예정가격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	체육 용지	32,675	2,100	운동시설 (철골조)	-	9,670,000,000	2027년 (하반기)

##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3년 제1회 평창군 공모사업 사전 검토 심의회 원안결 : 2023. 5
- 진부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 추진계획(평창군) : 2023. 5.
-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023. 5.
-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 2023. 9.
- 지방재정투자심사(강원도) : 2023.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12.
- 기획설계용역 착수 : 2024. 2.
- 공유재산관리계획(건축물 건립) 반영 : 2024. 4.
- 설계용역공모 : 2024. 7
- 실시설계 착수 ~ 완료 : 2024. 10. ~2025. 4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5. 5.
- 건립공사 착공 ~ 준공 : 2025. 5. ~ 2027. 2
- 개관 : 2027. 5.



##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변경)

- 기존 용평면 파크골프장을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당초 : 부지매입 2필지 10,162㎡ ⇒ 변경 : 부지매입 3필지 17,164㎡

### □ 사업개요

(당초)

- 위 치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404-3번지의 1필지
- 사업량 : 파크골프장 9홀, 부지매입(2필지, 10,162㎡)  
※ 2023년 장평리 404-3번지의 1필지 매입(10,162㎡)
- 사업기간 : 2022. 9월 ~ 2024. 12월
- 사업비 : 1,828백만원(보상비 328 시설공사비 및 기타 1,500)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828	328	1,500	-
국비	-	-	-	-
도비	-	-	-	-
군비	1,828	328	1,500	-

### (변경) 면적증가

- 위 치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404-3번지의 2필지
- 사업량 : 파크골프장 9홀, 부지매입(3필지, 17,164㎡)  
※ 2023년 부지매입 2필지 완료(장평리 404-3번지의 1필지, 10,665㎡)  
2024년 추가매입계획 1필지(장평리 산258번지, 6,499㎡)
- 사업기간 : 2022. 9월 ~ 2026. 12월
- 사업비 : 2,184백만원(보상비 424 시설공사비 및 기타 1,760)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2,184	327	300	1,557	
국비	-	-	-	-	
도비	1,144	-	-	1,144	
군비	1,040	327	300	413	

## □ 검토사항(필요성)

- 인구고령화 및 노년기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파크골프장 확장(9홀→18홀)
- 현재 사업부지로는 용벽등 설치비로 사업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가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비(공사비)를 절감하고자 함.

## □ 취득대상 재산내역

(당초) ○ 토지

(단위 : m<sup>2</sup>,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계				10,162	45,405,920	312,132,000		
용평면 장평리	404-3	전	5,352	5,352	37,517,520	254,412,000	2023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81	임야	18,187	4,810	7,888,400	57,720,000	2023년	평창군

(변경) ○ 토지

(단위 : m<sup>2</sup>,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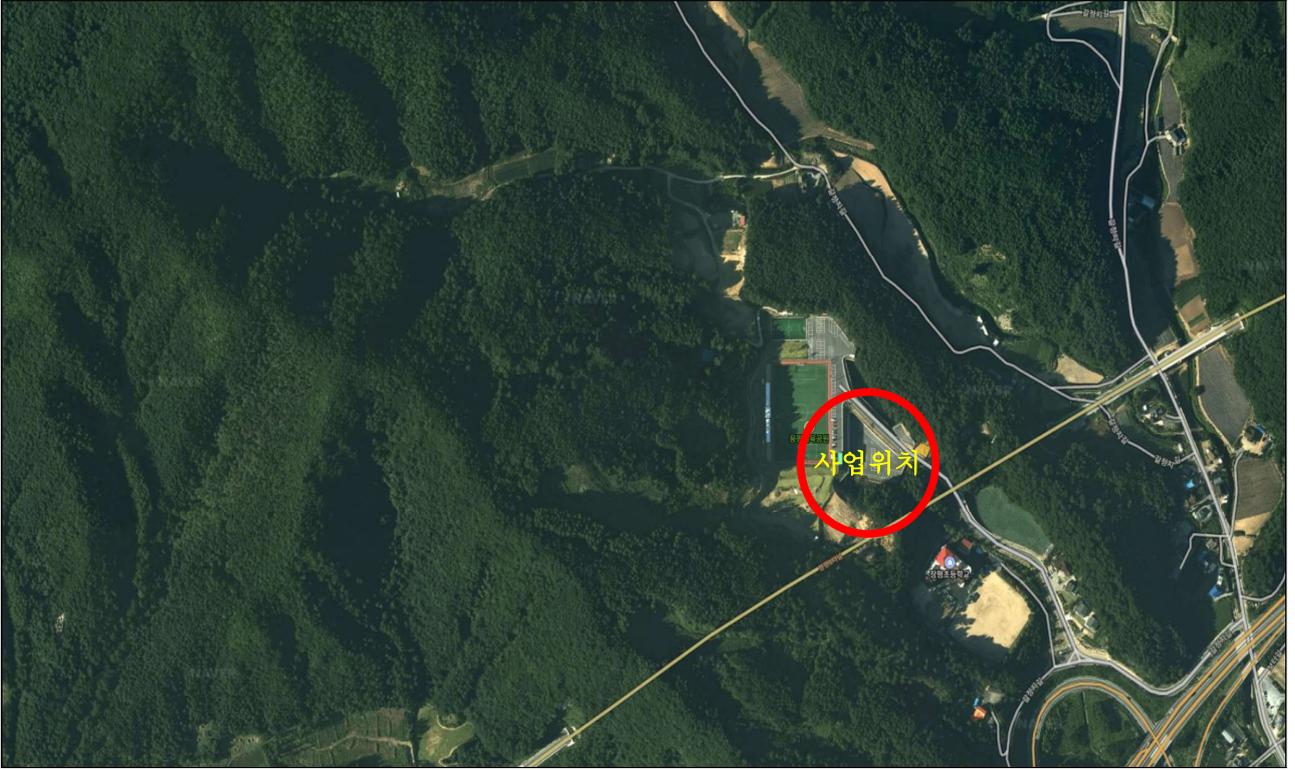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계				17,164	57,864,050	424,524,000		
용평면 장평리	404-3	전	5,352	5,352	37,517,520	254,412,000	2023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81-2	임야	5,313	5,313	8,713,320	53,130,000	2023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58	임야	6,499	6,499	11,633,210	116,982,000	2024년	국산림청

##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2년 11월
-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 : 2024년 04월
- 2025년 전환사업(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비 신청 : 2024년 07월
- 국유지(장평리 산258) 토지사용계약 추진 : 2024년 11월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4년 11월
- 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등 : 2025년 03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2025년 04월 ~ 2026년 12월



□ 위치도(동일)



##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 평창읍사무소 부지 내 「행복+학습센터」 건립에 광장이 조성되고 자활센터 철거 계획이 포함됨으로써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자활센터 건립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지원

###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읍 후평리 752-2, 753-3, 754-4(평창소방서 맞은편)
- 사업량 : 건물 신축 1동(941㎡, 지상2층) / 토지매입 3,498㎡(지목: 전)
- 총사업비 : 5,300백만원(토지 7억, 보상비 1.5억, 공사비 40억, 부대비 4.5억)
- 사업기간 : 2023. 7. ~ 2026. 4.

### □ 검토사항(필요성)

-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 사업인 「행복+학습센터」 건립에 따라 자활센터 철거 계획이 포함됨으로써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현재 자활센터는 노후 된 건물로 행복도시락 등 사업단 일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리실 설치기준(HACCP)에 적합한 장소 부재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임.

### □ 심의대상

- 건물(신축 1동)

(단위 : ㎡, 백만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건축연면적	용도(구조)	재산예정가격	취득시기
평창읍 후평리	752-2 753-3 754-4	전	3,498	941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음식점 (철근콘크리트)	4,000	2026년

※ 평창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심의의결 : 2023. 5. 1.(제3회 공유재산관리심의회)

## □ 추진경과

- 공유재산 심의(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 2023. 5.
- 2023. 1회 추경 예산 확보 (15억) : 2023. 6.
-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 (5억) : 2023. 7.
- 토지 매입 및 등기이전 : 2023. 8.
- 공공건축 기획용역 : 2023. 8. ~ 1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3. 9. ~ 11.
- 중지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23. 11.
- 공공건축 심의 : 2023. 12.

## □ 향후계획

- 설계공모 심시위원 구성 및 공고 : 2024. 2. ~ 4.
- 실시설계용역 : 2024. 4. ~ 11. (7개월)
- 2024년도 2회추경 예산 편성(13억) : 2024. 9.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12. ~ 2026. 4.(16개월)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입주기업 및 그린바이오 연구인력 등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인구가 체류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 구축 필요
- 그린바이오 관련 종사자 등 생활인구가 평창군에 체류함과 동시에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활력 제고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4년)
- 사업위치: 대화면 대화리 413-1번지 외 5필지
- 사업비: 8,000백만 원(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 사업규모: 건축면적 400㎡, 연면적 1,600㎡(지상 4층)
- 사업내용: 그린바이오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임대형 주거 공간 및 정주 생활 인프라 조성

## □ 추진상황

-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신청(중기부, 행안부 주관): '23. 4. 13.
-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선정: '23. 5. 2.
- 중기부-행안부-평창군 업무협약 체결: '23. 6. 25.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사업계획서 제출(정책담당관): '23. 6. 28.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확정: '23. 11. 6.
- '평창 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조성계획 수립: '24. 4. 8.

## □ 검토사항(필요성)

- 그린바이오 입주기업 및 그린바이오 연구인력 등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인구가 체류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여,
- 그린바이오 관련 종사자 등이 평창군에 체류함과 동시에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 □ 취득대상 재산내역

○ 토지 및 건물: 5필지(1,441㎡) / 1개 동(70.79㎡)

(단위: 원)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공시지가(㎡ 당)	추정보상액*	소유자	비고
총계		1,441		평균 110,317	398,886,500	1인	
대화면 대화리	413-1	298	대	106,800	79,566,000	정호철	
	413-2	245	대	106,800	65,415,000	정호철	
	414-3	650	전	114,700	186,387,500	정호철	
	414-4	145	대	108.900	39,476,250	정호철	
	414-30	103	대	108.900	28,041,750	정호철	
	414-3	70.79	주택**	시가표준액 없음	빈집	정환시	미등기

\* 추정보상액은 공시지가의 2.5배로 산출하였으며, 추후 감정평가 시 변동될 수 있음.

\*\* 미등기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부과 내역이 없으므로, 추후 감정평가 시 산출

※ 대화리 414-2번지는 공유지(일반재산)로, 취득 대상에서 제외함.

○ 건축물: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 신축 1식

소재지	지번	사업면적	사업내용	재산가액 (사업비)	비고
대화면 대화리	413-1 외 5필지	연면적 1,600㎡	평창 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신축 1식(지상 4층)	80억 원	

## □ 향후계획(안)

-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업계획 사전심사청구, 투자심사 등): '24. 4.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24. 5.
- 손실보상 협의: '24. 5. ~ 6.
- 건축기획용역: '24. 6. ~ 9.
-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24. 9.
- 건축설계 제안공모: '24. 10.
- 실시설계용역: '25. 1. ~ '25. 8.
- 착공 및 감리: '25. 9. ~ '27. 11.
- (가칭)평창 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운영 조례 제정: ~ '26. 12.
- 생활기기 등 구입: '27. 9.
- 준공 및 개관: '27. 12.

## □ 지적도



## □ 위치도



□ 현장사진



-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신모델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 및 특화사업 육성
- 여행 트렌드 반영한 산림복지 서비스 실현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4.
- 위 치 : 평창읍 상리 333-2번지 일원
- 사업량 : 치유센터 1동(건축 연면적 769.74m<sup>2</sup>)
- 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상 1층 : 세미나실, 사무실, 건강측정실 등
  - 지상 2층 : 치유체험실 등

## □ 추진사항

- 사업대상지 일원 사유지 매입 : 2019. 4. ~ 2021. 10.
- 군 관리계획 반영요청(보전관리⇒계획관리) : 2020. 1.
- 강원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20. 11.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 2021. 4. ~ 2022. 1.
- 실시설계 용역 : 2022. 4. ~ 2023. 10.
-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완료(강원특별자치도 승인사항) : 2023. 11. 27.
- 공사 계약·착공(착수) : 2024. 3.

## □ 검토사항(필요성)

- 평창강과 노람뜰, 평창읍 남산을 연결하는 관광단지 집중개발로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 등 힐링테마사업 조성

## □ 취득대상 재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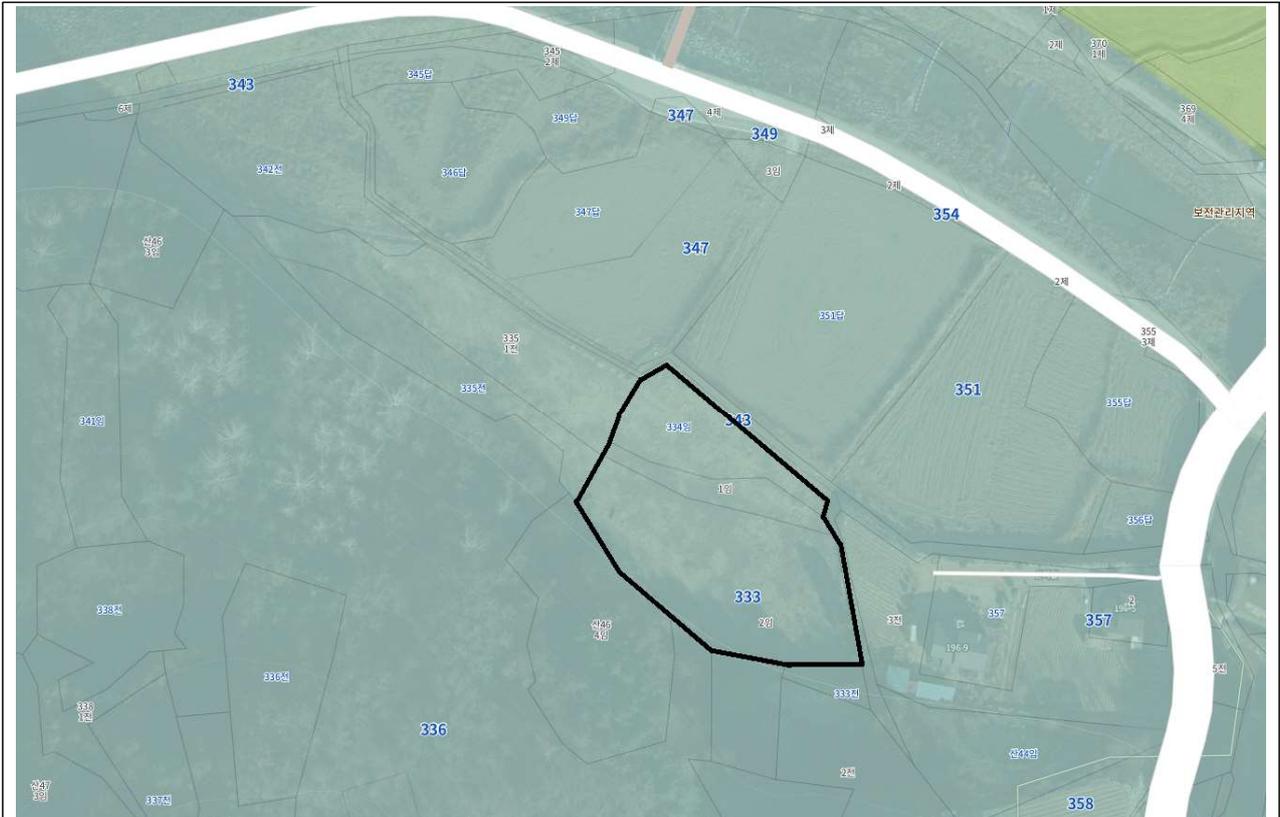
- 건축물 : 치유의 숲 치유센터 신축 1식

토 지 소 재	지번	사업면적	사업내용	재산가액 (사업비)	비 고
평창읍 상리	333-1 333-2 334	건축물 연면적 769.74㎡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립 1식 - 세미나실, 사무실, 건강측정실 - 치유체험실	3,000백만원	

## □ 향후계획

- 치유의 숲 운영 조례 제정 : 2024. 12.
- 사업완료 및 시범운영 : 2025. 1.

## □ 지적도





I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1. 추진배경

○ 대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진행

- 사업비 : 40억원
- 사업기간 : 2022~2026(기본계획 수립중)
- 사업내용 : 대화 판-깃 상상센터, 어린이 놀이터 조성, 역량강화사업
- 사업부지 : 2,089㎡(대화리 967-4번지 외 2필지)

※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부지에 건물이 세워질 예정



## 2. 사업목적

- 대화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탄-짓 상상센터 조성에 따라 인접한 토지, 건물을 아래와 같이 매입하여,
- 해당 사업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이 느낄 불편함을 덜어내고, 센터방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II

## 사업 개요

1. 사업명: 대화면 대체주차장 조성

2. 위치: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68-3 외 3필지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위치: 대화리 968-3, 960-7, 960-8</li> <li>• 연 면 적: 68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위치: 대화리 968-3, <b>968-4</b>, 960-7, 960-8</li> <li>• 연 면 적: <b>1042㎡</b> (361㎡ 증)</li> </ul>

3. 사업량: 대체주차장 조성

(당초) 토지 3필지(681㎡), 건물 1동(주택), 주차장 조성

(변경) 토지 4필지(1042㎡), 건물 1동(주택), 주차장 조성

4. 총사업비: 793,000천원(군비) → **1,017,400천원(군비) / 224,400천원 증**

(당초) 보상금(건물, 주거이전비, 영업손실금 등) : 570,000천원

주차장 조성(철거 및 폐기물 처리 포함) : 220,000천원

기타(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이전 비용 등) : 3,000천원

**(변경) 보상금(건물, 주거이전비, 영업손실금 등) : 714,400천원**

**주차장 조성(철거 및 폐기물 처리 포함) : 300,000천원**

기타(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이전 비용 등) : 3,000천원

※ 총사업비는 2023년 가감정액 및 견적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현지역건 변동 및 감정평가 시 변동가능

### III 취득대상 재산내역

○ 토지취득 (※ 968-4번지 추가)

(단위 : m<sup>2</sup>,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재산가액			취득 방법	소유자
				공시지가	감정추정가격	예정가격		
계			1,042	220,130,600	462,320,000	0		
대화면 대화리	968-3	대	496	111,996,800	238,080,000	0	기부 채납	윤석구
“	960-7	대	73	13,023,200	35,040,000	0	“	“
“	960-8	대	112	13,596,800	44,800,000	0	“	“
“	<b>968-4</b>	<b>답</b>	<b>361</b>	<b>81,513,800</b>	<b>144,400,000</b>	<b>144,400,000</b>	<b>매입</b>	<b>“</b>

※ 토지의 공시가격은 2023년 기준으로 적용

○ 건물취득

(단위 : m<sup>2</sup>,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연면 적	재산가액			취득 방법	소유자
				공시지가	감정추정가격	예정가격		
계			797.65	131,000,000	693,964,200	500,000,000		
대화면 대화리	968-3	주택	797.65	131,000,000	693,964,200	500,000,000	매입 (협의)	윤석구

※ 건물의 공시가격은 2023년 기준으로 적용

## □ 검토결과

-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우,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기부채납으로 진행
-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5억 원으로 매입
- 추가매입 토지(968-4)의 경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후 매입
  - (공부확인) 토지·건물등기사항 등 확인결과, 소유권에 특이사항 없음.
  - (관련법 검토) 취득재산이 1,000㎡이상으로 관리계획수립 대상

## IV 향후계획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군의회 의결: 2024. 4월 ~ 5월
2. 기부채납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절차이행: 2024. 6월 ~8월
  - 기부채납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등
3. 행정재산 등록 및 시설 활용
  - 대체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및 센터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활용

## V 위치도, 지적도

### □ 위치도(대화리 968-3 인근)



□ 지적도 (대화리 968-3 인근)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원거리에서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 편의와 고가의 농기계 구매 부담 경감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위 치: 대화면 대화리 1257-1, 1257-2
- 사 업 량: 농기계임대사업소 1개소 신축(1동 / 900m<sup>2</sup>)
- 사 업 비: 2,500백만원(국비 450, 도비 225, 군비 1,825)
  - 부지매입비: 500백만원
  - 공사비 및 감리비: 1,550백만원
  - 임대농기계 구입비: 450백만원
- 사업기간: 2024. 6월 ~ 2025. 6월

## □ 추진사항

-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 확정(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 11월 확정

## □ 검토사항(필요성)

-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근거리 이용 편의를 도모
- 농산물 생산의 기계화율을 높여,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임대 시설 현대화로 환경 개선 및 농기계의 체계적인 관리

## □ 취득대상 재산내역

### ○ 토지

(단위 : m<sup>2</sup>,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계			4,900	4,900	117,110,000	500,000,000		
대화면 대화리	1257-1	답	4,722	4,722	112,855,800	487,000,000	2024년 (하반기)	손준*
대화면 대화리	1257-2	답	178	178	4,254,200	13,000,000	2024년 (하반기)	손준*

### ○ 건물(신축)

사업비	구분	시설명	지번	규모/ 연면적	용도	구조	비고
1,550 백만원	신축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화리 1257-1,2	지상2층/ 900m <sup>2</sup>	임대농기계 보관 및 사무실 등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25.6월 준공

## □ 향후계획

- 토지매입 및 건축 공사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2024. 05.
-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실시설계: 2024. 06.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024. 09.
-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착공: 2024. 11.
-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준공: 2025. 06.



□ 신축예정부지



[붙임 라]

## 〈관계법령 발취〉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신설 2022.12.30.>